

한·미 FTA 3년의 이행 현황과 쟁점

- 김영귀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장
(ygkim@kiep.go.kr, Tel: 044-414-1188)
- 김혁황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hhkim@kiep.go.kr, Tel: 044-414-1135)
- 엄준현 무역통상실 다자통상팀 연구원
(jheom@kiep.go.kr, Tel: 044-414-1149)
- 김도희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 연구원
(dhkim@kiep.go.kr, Tel: 044-414-1031)

차 례 ●●●

1. 머리말
2. 상품 분야
3. 투자 분야
4. 규범 분야
5. 맺음말

주요 내용 ●●●

- ▶ 발효 3년 차를 맞은 한·미 FTA는 양국간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다만 산업별 영향은 편차가 심해 한·미 FTA 효과가 미진한 산업에 대한 활용대책 수립이 필요함.
- 한·미 FTA 발효(2012. 3. 15) 이후 34개월 동안 대(對)미 수출입은 발효 전 동기대비 각각 31.54%와 10.77% 증가했음. 한·미 FTA로 인한 무역증가효과는 각각 82.4%와 8.44%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어 FTA가 양국 교역, 특히 한국의 對미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FTA로 인한 대미 수출은 자동차와 부품, 금속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한 반면, 수입은 자동차와 부품 및 기타 제조업에서만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전체 품목에서 대미 수출입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포인트와 1.9%포인트 증가하는 등 품목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FTA가 양국간 무역의 내연적 확장(intensive margin)뿐 아니라 외연적 확장(extensive margin)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평가됨.
- 활용률 역시 발효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나, 2014년 현재 수입은 60.7%, 수출은 43.8%에 그치는 데다 산업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활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원산지증명 부담완화를 위한 양국 세관협력력이 필요한 상황임.
- 한·미 FTA로 인해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실적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며, 주로 운송기기와 비즈니스서비스업 부문에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과 함께 외국인투자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 우리나라가 이행한 내용이나 수준에 대해 양국 간 시각차가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입한 조치들이 한·미 FTA의 이행과 관련하여 문제될 소지도 있어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원산지 검증, 통관,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은 이행 내용이나 수준에 대해 한미 양국이 이견을 보인 경우로 향후 이행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세부규정을 마련하거나 세부 합의의 도출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의약품 가격인하정책,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는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입한 조치로서 한·미 FTA 협정의 취지 또는 의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1. 머리말

■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이후 양국은 공동위원회, 분야별 위원회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방안과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표 1. 한·미 FTA 발효 이후 공동위원회,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회의 주요 결과

회의	주요 내용
제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2012년 5월 16일)	공동위원회 의사규칙(Rules of Procedure) 채택, 분쟁해결 모범절차 규칙 합의
한·미 FTA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회의(2012년 6월 7~8일)	- 상품무역위원회: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협정상 의무이행 평가 및 세관 분야 협력 - 무역구제위원회: 무역구제 조항의 국내적 이행 현황 점검 - 서비스·투자위원회: 국경간 서비스, 투자 및 통신 분야의 양측 관심사항 논의 - ISD: 추후협약에 대한 양측의 기초적인 의견 교환 - 중소기업작업반: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제도 및 정보 교환
한·미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회의(2012년 7월 5일)	FTA 이행상황 점검 및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한·미 FTA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회의(2012년 11월 7~8일)	- 농산물위원회: 한·미 FTA 발효 이후 농산물 교역현황 교환, 저율할당관세(TRQ: Traiff Rate Quota) 적용품목의 2012년 이행 현황 점검 - 섬유의류위원회: 섬유류와 관련된 미국 측 통관절차 협의, 우리나라 섬유류 제조자의 생산자 정보제공 준비와 관련한 세부사항 논의 - 정부조달작업반: 미 정부조달제도의 투명성 강화 노력 논의
한·미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회의(2012년 11월 28일)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 양국간 규제협력 방안 논의
한·미 FTA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회의(2013년 6월 10~11일)	- 전문직서비스작업반: 활동계획 및 기술사, 수의사 및 건축사 등 관심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자격 인정관련 양국 절차 논의 - 무역에대한기술장벽(TBT)위원회: 전자제품의 기술규정 및 표준 등 관심사항, 투명성 증진방안, 다자포럼에서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 - 자동차작업반: 양국의 자동차 분야 기술표준·규정 등 관련 주요 동향과 투명성 관련 조항 이행 논의
한·미 FTA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회의(2013년 6월 27일)	- 무역구제위원회: 양국의 무역구제 분야 법령·정책관련사항, 무역구제 분야 협력 논의 - 중소기업작업반: 중소기업의 한·미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
한·미 FTA 분야별 위원회 (2013년 11월 4~5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보건의료제도 관련 상호 이해를 심화, 양국간 규제협력 방안 논의
한·미 FTA 산하 이행기구회의 (2014년 11월 25일)	- 고위급회의: 한·미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 -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양측은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협정 부속서 22-B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 - 서비스·투자 위원회: 양측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를 포함한 한·미 FTA 투자챕터상의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서비스 분야에서의 이행 현황을 점검

자료: 김영귀 외(2014), 「한·미 FTA 2년의 이행 현황과 성과」(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4-01호)의 표 1 및 한·미 FTA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를 참고로 저자 작성.

■ 본 보고서에서는 한·미 FTA 발효 3년을 맞아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쟁점을 살펴보고자 함.

- 특히 우리나라가 TPP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과 사전 양자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중심으로 한·미 FTA 이행 현황을 검토하였음.

2. 상품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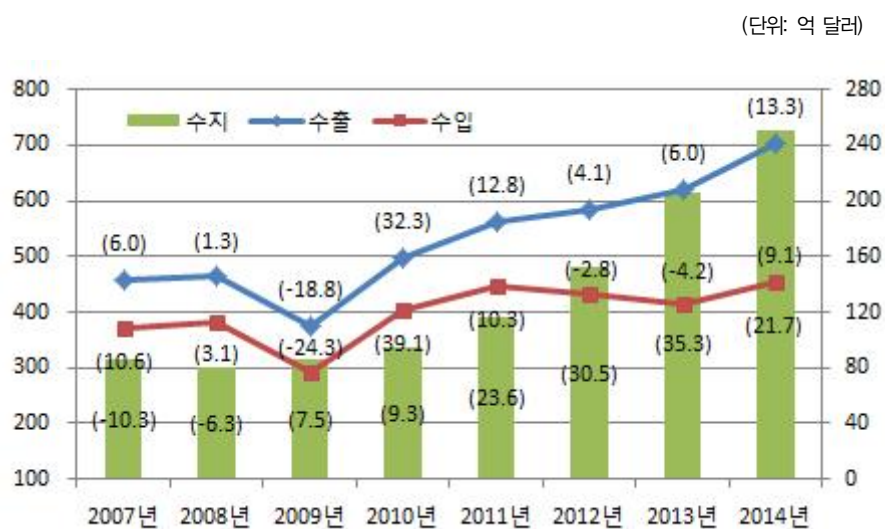
가. 상품 일반

1)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교역 현황

■ 한국의 대미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수입은 등락을 반복하다 2014년에 증가세로 전환

- 수출은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현재 703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2011년 446억 달러에서 2013년 415억 달러로 감소한 후 2014년에 453억 달러로 증가
- 이로 인해 무역수지 흑자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추세이며, 2014년에는 25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그림 1. 한국의 대미 교역 현황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main.screen>(검색일: 2015. 2. 28).

2)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출입 규모 변화

■ 한·미 FTA 발효 이후 34개월간(2012년 3월~2014년 12월) 한국의 대미 수출은 발효 이전 동기(2009년 3월~2014년 12월)대비 31.54% 증가하고, 수입은 10.77% 증가함.

- 같은 기간 미국의 대(對)주요국 수입은 일본이 19.3%로 가장 낮고, 한국이 31.54%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의 대주요국 수입은 일본이 -4.71%로 가장 낮고, EU가 41.2%로 가장 높았음.
- 미국의 대주요국 수입에서 한국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은 한·미 FTA가 미국 수입시장내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함.

표 2. 한·미의 대주요국 수입(2009.3~2011.12과 2012. 3~2014.12 간 증감률)

(단위: %)

한국의 대주요국 수입		미국의 대주요국 수입	
미국	10.77	한국	31.54
아세안	18.91	캐나다	21.75
중국	17.59	중국	24.49
EU	41.20	EU	21.83
일본	△4.71	일본	19.30
		멕시코	25.35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에 기반하여 저자 계산.

■ 한국의 대미 수출입 변화를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 한·미 FTA 발효로 인한 대미 수출은 82.4%, 대미 수입은 8.4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대미 수출을 발효 전 동기 실적과 단순 비교하면 23.64% 증가했으나, 요인별 분석 결과 한·미 FTA로 인한 수출 증가는 82.4%로 분석됨.
- 이는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았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오히려 감소했을 가능성을 의미함.
- 분석 기간 동안 명목환율은 완만히 하락(원화절상)하여 섬유, 자동차와 부품, 기타제조업 등 일부 산업의 수출 금액 증가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산업별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는 자동차와 부품(127.96%), 금속산업(109.16%)의 대미 수출을 두 배 이상 증가시킨 데 비해 기타 제조업(2.85%)과 화학(8.49%)에서는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데 그침.
- 한편 한·미 FTA 발효 전후 34개월 동안 대미 수입은 10.77% 증가했는데, 그중 한·미 FTA로 인한 수입 증가는 약 8.44%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 이 역시 한·미 FTA가 없는 상황에서의 대미 수입 증가율은 현재보다 크게 낮았을 것임을 의미함.
- 원화절상에 의한 환율변화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대미 수입을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미 FTA로 인한 산업별 대미 수입 효과는 일부 산업에서만 유의했으며, 자동차와 부품, 기타 제조업에서 각각 132.1%와 16.77%의 수입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남.

표 3. 한국의 대미 수출입 변화 분해(2009. 3~2011. 12과 2012. 3~2014. 12 간 증감률)

(단위: %)

산업	한국의 대미 수출			한국의 대미 수입		
	총 증감률	환율효과	한·미 FTA 효과	총 증감률	환율효과	한·미 FTA 효과
농림수산업	15.36	-	96.01	△30.68	4.93	-
제조업	섬유	8.05	1.30	65.17	6.98	6.55
	화학	32.65	-	8.49	16.29	3.88
	금속	79.78	-	109.16	22.12	7.06
	기타기계	36.73	-	63.39	13.90	5.13
	전자	△21.42	-	55.12	19.32	8.51
	자동차와 부품	78.28	7.88	127.96	82.86	-
	기타 제조업	23.47	1.91	2.85	8.96	4.22
전체	31.54	0.86	82.40	10.77	4.45	8.44

주: -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 및 추정 결과에 기반하여 저자 추정.

글상자 1. 한·미 FTA의 수출입 효과 추정 및 요인별 분해방법

■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을 종속변수로, 명목환율, 관세율, 한·미 FTA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기반하여 한국의 대미 총 수출입 변화를 한·미 FTA 등 요인별로 분해함.

- 분석자료는 EU(27개국)의 자료가 확보 가능한 2007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한국과 미국의 HS코드 6단위 품목별 수입액을 사용
-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 EU, 아세안을, 미국의 상대국으로는 한국, 캐나다, 멕시코, EU, 중국, 일본을 고려
- 수입상대국의 원화환율, 관세율, 각국의 기체결 FTA와 한·미 FTA 더미변수(한·미 상대국에 대해 2012년 3월 이전 0, 이후는 1)를 포함하는 모형을 설정하여 양국 교역에 영향을 미친 여타 변수들의 효과와 FTA의 효과를 구별했으며 FTA 효과에는 관세 및 관세 이외 효과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추정분석에 기반하여 한·미 FTA 발효 전후 34개월(2009년 3~2011년 12월과 2012년 3~2014년 12월) 수출입변화율을 계산하고, 같은 기간 환율변화분, GDP 변화율 등과 각 변수의 계수 추정치를 이용하여 요인별 효과를 추산함.

■ 분석대상 기간 동안의 순상품 교역조건과 소득교역 조건 추이를 감안하면,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출입 변화는 가격변동에 의한 효과보다 수출물량의 증감에 의한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됨.

- 순상품 교역지수는 2007년 이후 2008~09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뒤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 2011년 이후에는 안정화 추세를 시현하고, 소득교역조건은 지속적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교역조건이 안정 속에서 수출물량 확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전후로는 순상품교역조건은 안정적인 반면 소득교역조건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분석된 한·미 FTA로 인한 수출효과는 수출물량 확대에 기인한 부분이 큰 것으로 보임.

그림 2. 한국의 교역조건지수(201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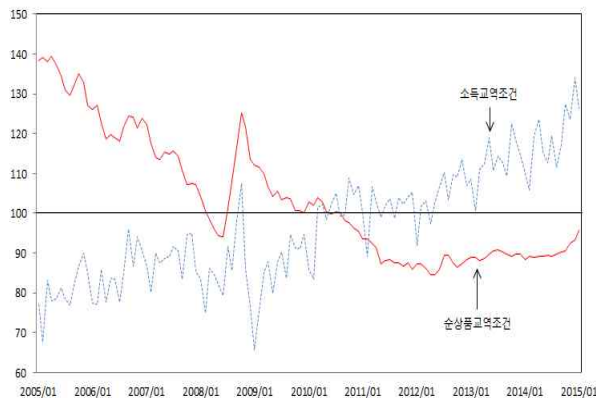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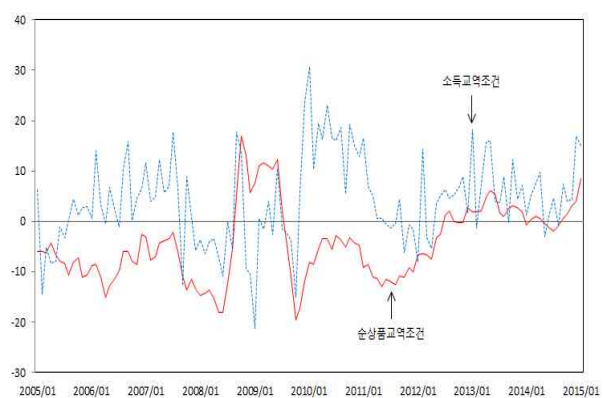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의 교역조건 전년동월대비 변화율



주: 교역조건은 수출재와 수입재의 가격비율을 의미함. 순상품교역조건은 수출입재화의 가격변동만을, 순교역조건은 순상품교역조건에 수출물량지수를 곱하여 산출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015년 3월 9일 접속).

3)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출입 다양성 변화

■ 한국의 전체 교역 품목¹⁾에서 대세계 및 대미 수출입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한·미 FTA 발효 3년차 대미 수출품목 비중은 2.1%포인트, 수입품목 비중은 1.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미 FTA가 양국간 무역의 외연적 확장(extensive margin)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음(표 4).

- 수출의 경우 2011년 총 11,900개 품목 중 46.6%에 해당하는 5,540품목에 대해 미국으로 수출이 이루어졌으나 2014년에는 총 12,243개 품목 중 48.7%에 해당하는 5,965개 품목에 대해 미국으로 수출이 이루어져 대미 수출 품목 비중은 2.1%포인트 증가함.
- 대세계 수출품목 비중 역시 2011년 77.9%(9,265개 품목)에서 2014년 78.7%(9,633개 품목)로 0.8%포인트 증가하였으나 대미국에 비해 증가폭이 작음.
- 수입의 경우 2011년 총 11,900개 품목 중 69.0%에 해당하는 8,210개 품목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이루어졌으나, 2014년에는 총 12,243개 품목 중 70.9%에 해당하는 8,676개 품목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이루어져 대미국 수입품목 비중은 1.9%포인트 증가함.
- 대세계 수입품목 비중은 2011년 90.1%(10,722개 품목)에서 2014년 90.1%(11,032개 품목)로 변화가 없음.

■ 한국의 대미 수출입 품목 비중은 수출의 경우 금속, 자동차와 부품에서, 수입의 경우 화학, 자동차와 부품에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금속,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한국의 대미국 수출품목 비중은 2011년 59.6%와 45.3%에서 2014년 64.1%와 48.4로 각각 4.5%포인트와 3.1%포인트 증가

1) HSK 10단위를 이용함.

- 금속에 대한 대세계 수출품목 비중은 1.1%p(92.9 → 94.0%) 증가한 데 반해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대세계 수출품목 비중은 2.5%p(91.8 → 94.3%) 증가
- 화학,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한국의 대미 수입품목 비중은 2011년 66.7%와 69.2%에서 2014년 71.8%와 74.8로 각각 5.1%포인트와 5.7%포인트 증가
- 화학에 대한 대세계 수입품목 비중은 2.2%포인트(86.0 → 88.2%) 증가한 데 반해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대세계 수입품목 비중은 3.2%포인트(83.6 → 86.8%) 증가

표 4. 한국의 전체 품목에서 대세계 및 대미국 수출입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산업 ²⁾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품목 수 (개)	대세계 (%)	대미 (%)	전체 품목 수 (개)	대세계 (%)	대미 (%)	전체 품목 수 (개)	대세계 (%)	대미 (%)	전체 품목 수 (개)	대세계 (%)	대미 (%)
수출	농림수산업	978	53.8	22.4	1,117	51.4	23.7	1,118	52.1	24.4	1,109	54.6	24.5
	제조업	10,922	80.0	48.7	11,115	79.9	49.6	11,115	80.7	50.7	11,134	81.1	51.1
	섬유제품	892	85.2	44.8	891	83.1	47.1	891	84.7	47.5	882	84.9	47.2
	화학	2,732	67.1	34.3	2,721	69.4	36.1	2,721	69.6	35.1	2,723	69.7	36.3
	금속	1,053	92.9	59.6	1,065	93.6	59.4	1,065	94.8	63.7	1,067	94.0	64.1
	기타 기계	1,240	91.1	63.1	1,238	90.7	64.1	1,238	92.2	64.5	1,251	92.2	64.3
	전자	254	93.3	76.4	254	95.3	77.6	254	96.1	82.3	254	95.7	79.1
	자동차와 부품	159	91.8	45.3	159	95.6	41.5	159	96.9	45.3	159	94.3	48.4
	기타 제조업	4,592	79.6	50.3	4,787	78.1	50.5	4,787	78.7	52.1	4,798	79.8	52.6
	전 산업	11,900	77.9	46.6	12,232	77.3	47.2	12,233	78.1	48.3	12,243	78.7	48.7
수입	농림수산업	978	80.4	45.6	1,117	77.0	44.5	1,118	75.9	43.7	1,109	78.3	47.1
	제조업	10,922	91.0	71.1	11,115	91.2	71.3	11,115	91.2	72.7	11,134	91.3	73.2
	섬유제품	892	93.2	51.2	891	93.4	52.5	891	93.6	55.4	882	93.3	54.5
	화학	2,732	86.0	66.7	2,721	87.9	67.9	2,721	87.5	69.7	2,723	88.2	71.8
	금속	1,053	96.2	80.2	1,065	96.1	80.6	1,065	96.2	81.3	1,067	96.7	80.4
	기타기계	1,240	94.0	74.3	1,238	94.9	75.7	1,238	94.7	77.9	1,251	94.2	77.6
	전자	254	100.0	94.1	254	99.2	94.5	254	97.6	92.5	254	98.8	94.1
	자동차와 부품	159	83.6	69.2	159	85.5	68.6	159	84.3	71.1	159	86.8	74.8
	기타 제조업	4,592	91.3	73.4	4,787	90.3	72.4	4,787	90.6	73.5	4,798	90.4	73.6
	전 산업	11,900	90.1	69.0	12,232	89.9	68.9	12,233	89.8	70.1	12,243	90.1	70.9

주: 품목 수는 HSK 10단위 개수를 의미함.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4)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활용률 분석

■ 수출입 활용률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의 대미 수입 활용률(수입 활용률)이 미국의 대한 수입 활용률(수출 활용률)보다 높게 나타나 국내 수입업자들이 한·미 FTA를 보다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표 5).

2)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버전 3의 2단위를 기준으로 산업을 구분함.

- 2014년의 수출입 활용률은 2012년보다는 상승하였으나 2013년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함.
 - 수입 활용률은 2012년 52.4%에서 2014년 60.7%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의 62.2%보다 소폭 하락
 - 수출 활용률 역시 2012년 41.8%에서 2014년 43.8%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의 47.5%보다 하락
- 수출입 활용률은 산업별로 상이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활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별 원인 진단이 필요한 실정임.
 - 수출활용률은 화학, 금속, 전자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동차와 부품산업에서는 낮은 수준 유지
 - 수입활용률은 섬유제품, 화학, 자동차와 부품, 기타 제조업에서는 다소 상승했으나, 농림수산물업, 금속, 기타 기계, 전자에서는 감소함.
 -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 활용률이 수입 활용률보다 높으나, 자동차와 부품의 경우 수입활용률은 80%를 상회하는 반면 수출 활용률은 2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임.
 - 이는 전술한 한·미 FTA로 인한 자동차와 부품의 수입증가는 특혜관세 적용에 따른 효과인데 비해, 수출증가는 관세보다는 비관세장벽의 완화에 기인한 효과임을 의미함.
- ※ 활용률은 특혜관세 적용대상 수입액에서 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표 5. 한·미 FTA 관세 활용률

(단위: %)

산업	수입 활용률			수출 활용률		
	2012년 3~12월	2013년 1~12월	2014년 1~12월	2012년 3~12월	2013년 1~12월	2014년 1~12월
농림수산물업	85.9	87.1	72.8	86.1	91.1	92.6
제조업	50.0	60.5	59.6	41.7	47.4	43.8
섬유제품	39.9	48.2	52.6	62.3	62.8	62.2
화학	59.9	75.4	76.2	77.3	88.6	90.0
금속	43.1	44.5	38.0	64.8	73.4	75.9
기타 기계	29.8	35.7	30.9	65.8	75.6	74.2
전자	28.9	29.8	24.8	50.8	64.2	67.6
자동차와 부품	50.0	80.6	83.1	19.4	23.9	20.8
기타 제조업	52.0	60.8	63.0	48.0	53.8	53.4
전 산업	52.4	62.2	60.7	41.8	47.5	43.8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및 USITC(<http://dataweb.usitc.gov/>)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3. 투자 분야

■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FTA 발효 이후 유치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됨(표 6).

- 한·미 FTA 발효 이후 현재까지(2012년 4월~2014년 12월)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04억 달러로 동기(2009년 4월~2011년 12월)의 55억 달러보다 89.6% 증가

- 이는 전체 외국인투자 증가율인 29.9%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전체 외국인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함.
-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FTA 발효 직후 급증한 후 안정적인 가운데, 전체 외국인투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
- FTA 발효 직후(2012년 4~12월) 32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한 한국의 대미국 투자는 2013년 35억 달러, 2014년 36억 달러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임.
- 이에 반해 전체 외국인투자는 2013년 145억 달러에서 2014년 190억 달러로 30.6% 증가

표 6. 한·미 FTA 발효 이후 기간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신고금액 기준)

	발효 1년차		발효 2년차		발효 3년차	
	발효 이전	발효 이후	발효 이전	발효 이후	발효 이전	발효 이후
	11.4~11.12	12.4~12.12	10.4~11.12	12.4~13.12	09.4~11.12	12.4~14.12
대세계	11,668	13,940 (19.5)	25,205	28,488 (13.0)	36,553	47,491 (29.9)
대미국	1,904	3,247 (70.5)	4,306	6,773 (57.3)	5,475	10,382 (89.6)
비중	16.3	23.3	17.1	23.8	15.0	21.9

주: 1)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비중은 한국의 대세계 외국인직접투자에서 대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in/it/investstats/investstats.jsp>(검색일: 2015. 3. 2).

표 7. 연도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신고금액 기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12월	2013년	2014년
대세계	11,484 (-1.9)	13,073 (13.8)	13,673 (4.6)	16,286 (19.1)	13,940 (19.5)	14,548 (-10.7)	19,003 (30.6)
대미국	1,486 (11.9)	1,975 (32.8)	2,372 (20.1)	3,674 (54.9)	3,247 (70.5)	3,525 (-4.0)	3,609 (2.4)
비중	12.9	15.1	17.3	22.6	23.3	24.2	19.0

주: 1)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비중은 한국의 대세계 외국인직접투자에서 대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in/it/investstats/investstats.jsp>(검색일: 2015. 3. 2).

■ 한·미 FTA 발효 이후(2012년 4월~2014년 12월) 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증가는 제조업의 운송기기 부문, 서비스업의 비즈니스서비스업 부문에서 주로 발생함(표 8).

- 제조업에 대한 미국의 직접투자는 FTA 발효 이후 32.5억 달러(전년동기대비 77.9%) 증가
 - 특히 운송기기의 경우 전체 외국인투자가 24.4% 감소한 것과 달리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는 FTA 발효 이전 4천만 달러에서 발효 이후 17.1억 달러(증가율 3,790%)로 크게 증가
- 서비스업에 대한 미국의 직접투자는 FTA 발효 이후 65.1억 달러(전년동기대비 79.1%) 증가
 - 비즈니스서비스업의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는 FTA 발효 이전 3.4억 달러에서 발효 이후 455% 증가한 18.8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투자는 136% 증가하는 데 그침.

- 부동산임대의 경우에도 미국의 직접투자는 FTA 발효 이전 17.3억 달러에서 26.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50.1%로 전체 서비스업의 증가율보다 낮음.

표 8.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신고금액기준)

산 업	대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대미국 외국인직접투자		
	발효 이전	발효 이후	증감률	발효 이전	발효 이후	증감률
	2009.4~11.12	2012.4~14.12	2012.4~14.12	2009.4~11.12	2012.4~14.12	2012.4~14.12
전 산업	36,553	47,491	29.9	5,475	10,382	89.6
농림수산업	75	26	-65.6	1		-99.5
제조업	15,129	16,915	11.8	1,828	3,252	77.9
섬유	90	395	340.7	2	13	482.1
화학	3,711	5,370	44.7	273	597	119.0
금속	1,232	687	-44.3	17	214	1,180.5
기타 기계	1,057	1,531	44.9	70	229	224.6
전자	4,424	2,055	-53.5	1,233	312	-74.7
운송기기	3,417	2,584	-24.4	44	1,709	3,790.3
기타 제조업	1,198	4,292	258.1	190	179	-5.9
서비스업	20,409	29,802	46.0	3,637	6,514	79.1
도소매업	4,609	2,688	-41.7	162	357	119.6
운수 및 음식숙박업	958	3,077	221.2	44	507	1,062.8
금융보험업	3,752	6,674	77.9	641	1,035	61.5
부동산임대	5,476	6,991	27.7	1,732	2,601	50.1
비즈니스서비스업	4,054	9,593	136.6	339	1,881	455.4
기타 서비스업	1,560	780	-50.0	718	133	-81.5
전기가수수도건설	940	748	-20.4	9	615	6,752.7

주: 1) 빈 셀은 투자금액이 없거나 백만 달러 미만인 경우임.

2) 음영은 투자금액이 많은 상위 2개 세부업종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in/it/investstats/investstats.jsp>, 검색일: 2015. 3. 2).

■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는 대세계 해외직접투자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FTA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표 9).

- 한·미 FTA 발효 이후(2012년 4월~2014년 12월)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는 160억 달러로, 동기(2009년 4월~2011년 12월)의 132억 달러보다 20.7% 증가
 - 이는 한국의 대세계 투자 증가율 8.0%에 비해 높음.
-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FTA 발효 이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대미 투자 감소로 인한 영향과 유로존 위기심화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의한 미국으로의 투자전환에 따른 효과일 가능성도 존재
 - 2008년 51억 달러이던 한국의 대미 투자는 2009년에 36억 달러, 2010년에 35억 달러로 감소하였고, FTA 발효 이후인 2013년(57억 달러)과 2014년(52억 달러)의 투자는 2008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는 못함.
 - 2011년 한국의 대세계 해외직접투자는 유로존 위기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유럽 및 중남미 등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는 감소한 반면, 자원개발 투자를 중심으로 대미국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³⁾

3) 기획재정부(2012), 「2011년도 해외직접투자 동향」, 보도자료(2월 16일).

표 9. 한·미 FTA 발효 이후 기간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투자금액 기준)

	발효 1년차		발효 2년차		발효 3년차	
	발효 이전	발효 이후	발효 이전	발효 이후	발효 이전	발효 이후
	11.4~11.12	12.4~12.12	10.4~11.12	12.4~13.12	09.4~11.12	12.4~14.12
대세계	22,135	22,331 (0.9)	50,547	52,259 (3.4)	71,463	77,148 (8.0)
대미국	5,445	5,094 (-6.4)	10,207	10,780 (5.6)	13,188	15,958 (21.0)
비중	24.6	22.8	20.2	20.6	18.5	20.7

주: 1)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비중은 한국의 대세계 해외직접투자에서 대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5. 3. 2).

표 10. 연도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투자금액 기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12월	2013년	2014년
대세계	20,777 (-14.1)	24,764 (19.2)	29,178 (17.8)	28,674 (-1.7)	22,331 (0.9)	29,928 (4.4)	24,889 (-16.8)
대미국	3,590 (-29.9)	3,450 (-3.9)	7,306 (111.8)	5,642 (-22.8)	5,094 (-6.4)	5,685 (0.8)	5,179 (-8.9)
비중	17.3	13.9	25.0	19.7	22.8	19.0	20.8

주: 1)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비중은 한국의 대세계 해외직접투자에서 대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5. 3. 2).

■ 한·미 FTA 발효 이후(2012년 4월~2014년 12월) 대미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함(표 11).

- 대미 투자증가율은 제조업(29.6%)에서 가장 높으나 투자금액 증가는 서비스업(7.6억 달러)에서 가장 큼.
 - 농림수산업에서의 대미 투자는 23.7% 증가한 반면 대세계 투자는 12.0% 감소
- 제조업의 경우 대미 투자는 전자(2.8억 달러), 기타기계(2.3억 달러), 화학(2.1억 달러)에서 FTA 발효 이후 2억 달러 이상 증가
- 서비스업에 대한 대미 투자는 운수 및 음식숙박업과 부동산임대를 제외하고 모든 세부 서비스업에서 FTA 발효 이후 감소
 - 운수 및 음식숙박업의 대세계 투자가 FTA 발효 이후 11.2% 감소한 것과 달리 대미 투자는 6.0억 달러 증가
 - 부동산임대의 대미국 투자는 FTA 발효 이후 23.5억 달러 증가하여 대미국 전 산업 투자증가인 27.7억 달러의 대부분을 차지

표 11.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투자금액 기준)

산 업	대세계 해외직접투자			대미국 해외직접투자		
	발효 이전	발효 이후	증감률	발효 이전	발효 이후	증감률
	2009. 4~11. 12	2012. 4~14. 12	2012. 4~14. 12	2009. 4~11. 12	2012. 4~14. 12	2012. 4~14. 12
전산업	71,463	77,148	8.0	13,188	15,958	21.0
농림수산물업	21,011	18,491	-12.0	3,221	3,983	23.7
제조업	20,710	22,419	8.2	1,819	2,358	29.6
섬유	1,136	1,074	-5.4	21	153	644.3
화학	3,192	2,797	-12.4	179	385	115.5
금속	3,131	2,472	-21.0	207	224	8.6
기타기계	1,183	1,218	3.0	88	318	261.3
전자	5,411	8,378	54.8	665	942	41.7
운송기기	3,696	4,011	8.5	197	135	-31.3
기타제조업	2,962	2,469	-16.7	464	201	-56.7
서비스업	27,165	32,394	19.2	7,728	9,457	22.4
도소매업	4,185	4,447	6.3	2,040	1,351	-33.7
운수 및 음식숙박업	2,259	2,005	-11.2	240	836	248.4
금융보험업	7,194	10,291	43.0	2,593	2,555	-1.5
부동산임대	4,892	8,505	73.8	700	3,050	336.0
비즈니스서비스업	7,128	5,284	-25.9	1,572	1,245	-20.8
기타서비스업	1,507	1,863	23.6	584	420	-28.0
전기가스수도건설	2,576	3,844	49.2	420	159	-62.1

주: 음영은 투자금액이 많은 상위 2개 세부업종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5. 3. 2).

4. 규범 분야

가. 국내법률 개정 현황

■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서 미국과 합의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국내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한 결과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제기되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완전한 이행을 한 것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는 협정 발효 전에 23건의 법률과 부수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협정이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협정 발효 이후에 개정하기로 한 법률에 대해서도 개정을 준비 중임.
- 미국도 우리나라의 한·미 FTA 협정 이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 협상 당시 미국 측 대표였던 Wendy Cutler도 2013년 3월 이행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⁴⁾
 - 미국 무역대표부도 2014년 3월 한·미 FTA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행수준을 높이 평가하였음.⁵⁾

4) The Korea Society(2013), "Transcript: KORUS FTA - One Year On," p. 1, http://www.koreasociety.org/corporate/the_korea-u.s._free_trade_agreement_one_year_on.html(accessed March 4, 2014).

5)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14), "2014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 207,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4%20NTE%20Report%20on%20FTB.pdf>(accessed March 4, 2014).

표 12. 한·미 FTA 관련 국내법을 개정 현황 및 추진 상황

구분	법령 명칭	추진상황	유예상황	주요 내용
국회 통과	관세법	07.12.31. 공포 08.1.1. 시행		저작권 침해 물품에 대한 직권 통관보류제도 도입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08.3.21. 공포 08.9.22. 시행		FTA 체결국에 대한 다자 세이프가드조치 적용 배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08.12.19. 공포 09.3.20. 시행		상표권, 저작권 침해를 중대범죄로 규정
	대외무역법	09.4.22. 공포 09.10.23. 시행		섬유·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 협력
	전파법	10.7.23. 공포 11.1.24. 시행	13.3.15. 이후	정보통신기기 인증 관련 상호인정 제도 도입 (시험기관 지정, 국제적 적합성 평가 체계 구축)
	개별소비세법	11.12.31. 공포 12.1.1. 시행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3년 내 5% 단일관세율)
	지방세법	11.12.2. 공포 12.3.15. 시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구간 조정 및 세율인하: 5단계 → 3단계
	우편법	11.12.2. 공포 12.3.15. 시행	서명 5년 후 (12.6.30)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의 범위 축소
	행정절차법	11.12.2. 공포 12.3.15. 시행		법령 입법 예고기간을 20일 → 40일로 확대
	특허법	11.12.2. 공포 12.3.15. 시행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공지에의 적용시기 연장(6월 → 12월)
	디자인보호법	11.12.2. 공포 12.3.15. 시행		디자인권 등의 침해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12.2. 공포 11.12.2. 시행		동의의결제 도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1.12.2. 공포 12.3.15. 시행		관련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08.12.26. 공포 09.1.26. 시행		FTA 특혜관세 대상 상품에 대한 통관절차의 신속화·간소화
		10.1.1. 공포 10.3.2. 시행		다자세이프가드의 재량적 배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 개시전 상대국에 협의 기회 부여, 특정 품목에 대한 양자세이프가드 조치 근거 규정
		11.6.30. 공포 11.7.1. 시행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근거 마련
		11.12.2. 공포 12.3.15. 시행		WTO SSG(특별세이프가드) 배제

구분	법령 명칭	추진상황	유예상황	주요 내용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11.12.2. 공포 12.3.15. 시행	14.3.15. 이후	신상품 개발 금지 금융위의 우체국 보험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상표법	11.6.30. 공포 11.7.1. 시행		몰수 대상에 상표권 침해에 사용된 재료 포함
		11.12.2. 공포 12.3.15. 시행		상표 범위 확대(소리·냄새 포함), 법정손해배상제도 신설, 증명표장제도 도입, 전용사용권 등록의무 폐지,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등
	실용신안법	11.12.2. 공포 12.3.15. 시행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6월 → 12월)
	저작권법	11.6.30. 공포 11.7.1. 시행	14.3.15. 이후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50년 → 70년)
		11.12.2. 공포 12.3.15. 시행	14.3.15. 이후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50년 → 70년) 등
	공인회계사법	11.6.30. 공포 11.7.1. 시행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단계적 개방(1단계)
			17.3.15. 이후	(2단계)
	전기통신사업법	10.3.22. 공포 10.9.23. 시행		
			14.3.15. 이후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완화
	약사법	11.12.2. 공포 12.3.15. 시행		의약품의 시판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통보)
		15.3.3. 국회 통과	15.3.15. 이후	의약품의 시판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시판방지 조치)
	세무사법	11.6.30. 공포 11.7.1. 시행		외국세무법인에 대한 단계적 개방(1단계)
			17.3.15. 이후	(2단계)
정비 예정	외국법자문사법	09.3.25. 공포 09.9.26. 시행		외국 로펌에 대한 단계적 개방(1단계)
		11.4.5. 공포 11.4.30. 시행		(2단계)
			17.3.15. 이후	(3단계)
	방송법		15.3.15. 이후	일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간접투자 제한 완화
	보험업법 (잠정)		15.3.15. 이후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보험 판매와 관련된 지급능력 사안은 금융위 규제 대상

주: 음영 부분은 정비 예정인 법률을 의미함.

자료: 법제처(2015), 한·미 FTA 관련 이행법률, <http://oneclick.law.go.kr/CSP/CnpCisMain.laf?popMenu=ov&csmSeq=640&ccfNo=1&cciNo=2&cnpCisNo=1>(검색일: 2015. 3. 5)을 기초로 저자 일부 수정.

나. 주요 쟁점

1) 자동차 세율 및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율을 인하하고 세율구간을 단순화하기로 미국과 합의하였으며,⁶⁾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공포하였음.

- 이때 개정된 「개별소비세법」(법률 제11106호, 2011. 12. 2, 일부개정)은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한·미 FTA가 발효한 해(1차연도)에는 8%, 발효 2차연도에는 7%, 발효 3차연도에는 6%, 그 이후에는 5%로 연차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때 개정된 「지방세법」(법률 제11108호, 2011.1 2. 2, 일부개정)은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미국은 자동차 세율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이행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고 있고 또 사안의 성격상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여, 자동차 세율에 관해서는 완전한 이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2013년 3월 통과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우리나라 국내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

※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CO₂ 저(低)배출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高)배출차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CO₂를 저감하는 제도. 프랑스의 'Bonus-Malus' 제도와 유사하다고 하여 '한국판 보너스-말러스' 제도로 부르기도 함.

-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구상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0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2009년 7월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관련 정부정책이 발표됨.
 -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제3항에 법적 근거가 마련됨.
- 「대기환경보전법」은 2013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같은 해 4월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는데, 부칙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시행할 것을 규정
 - 승용차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총 중량이 3.5톤 미만)에 대해 신차 구매 시 구매자에게 1회 적용.
 - CO₂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담금을 부과
- 2014년 1월부터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을 개시하여, 당초 의도했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와 국내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은 매우 크다는 결론에 도달
 -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였음.
- 2014년 9월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2020년 말까지 시행연기.
 -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부칙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6) 한·미 FTA 협정문 제2.12조(배기량 기준 조세) 제1항과 제2항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협정문, <http://www.fta.go.kr/us/doc/1/>(검색일: 2015. 3. 6).

■ 미국은 우리나라가 도입하려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한·미 FTA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며 설혹 협정위반은 아니더라도 한·미 FTA의 정신(spirit)을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

- 제도가 시행되면 결과적으로 CO₂ 배출량이 큰 미국산 자동차는 불리해지고 유럽산(디젤)과 일본산(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12월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였던 웬디 커틀러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TPP와 한국’이라는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음.⁷⁾
- 포드 자동차의 스티브 비건 부사장은 한·미 FTA에 관한 미국 상원 소위원회에서 한국의 고객이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구입할 때 1대당 약 7,000달러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고 증언하였음.⁸⁾

■ 우리나라의 환경부는 미국 측의 우려에 대해 규율 대상과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⁹⁾

- 한·미 FTA 제2.12조 제3항은 엔진 배기량에 따른 차등 과세를 금지하고 있으나,¹⁰⁾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는 CO₂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엔진 배기량과는 기준이 다름.
-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므로 국가의 세수 확충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임.
- 소비자가 신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므로 자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정책도 아님.

■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관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갈등은 현재 해결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후에도 미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함.

- 어떤 쟁점이 해결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한·미 FTA 자동차 분야에서의 이행이 성공적이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보아,¹¹⁾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관한 양국의 갈등은 해결된 것으로 추정됨.

7) 『경향신문』(2013. 12. 13), 「미 정부 ‘한국, TPP 참여 전 해야 할 일 있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312131617371&code=920501&med=khan(검색일: 2015. 3. 6).

8) World Trade Online(2014. 8. 1), “Korea Moves To Resolve Issues Flagged By U.S. As Hurdles to TPP Entry.” <http://insidetrade.com/inside-us-trade/korea-resolve-issues-flagged-by-hurdles-to-tpp-entry>(accessed on March 6, 2015).

9) 환경부(2014),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바로알기」(설명자료), p. 4,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2&seq=5207(검색일: 2015. 3. 5).

10) 한·미 FTA 협정문 제2.12조(배기량 기준 조세) 제3항: 대한민국은 차종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협정문, <http://www.fta.go.kr/us/doc/1>(검색일: 2015. 3. 6).

11) Washington Trade Daily(2015. 3. 16), *Three Years of KorUS*, Vol. 24, No. 53.

2) 원산지 검증

■ 미국은 한국 관세청이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서류 요구가 과도함으로써 미국 제품을 수입하는 업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고 결과적으로 FTA효과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¹²⁾

■ 냉동농축오렌지주스 원산지 검증 문제는 우리나라와 미국은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양국 정부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증명서를 원산지 증빙자료의 하나로 고려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해결되었음.

- 당초 우리 관세청은 일부 미국 업체들이 브라질산 원액을 섞어 수출한다는 의혹을 가졌으며, 미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업체들에 요구하였음.¹³⁾

※ 미국산 냉동농축오렌지주스는 관세율이 54%였지만, 한·미 FTA 발효로 관세율이 0%로 낮아졌음.

-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2014년 3월 미국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상대국 정부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증명서를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음.¹⁴⁾

○ 의심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증 실시 가능하므로, 한·미 FTA에 규정된 직접검증 방식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국 관세청이 미국에서 수출된 도요타 자동차에 대해 한·미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예비판정을 내려 미국이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최종판정에서는 미국산으로 인정받아 해결되었음.

- 도요타가 예비판정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해 문제가 되었으나, 최종 판정에서는 한·미 FTA 방식으로 변경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해결된 것으로 알려짐.¹⁵⁾

■ 냉동농축오렌지주스와 도요타자동차의 원산지에 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갈등은 해소되었지만, 향후 다른 품목들에서도 유사한 이의제기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대비가 필요함.

-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구체적인 품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 관세청의 과도한 원산지 검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품목이 더 있다고 언급하였음.¹⁶⁾

1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14), "The U.S.-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KORUS FTA): Provisions and Implementation," p. 14. (September 16)

13) 『매일경제신문』(2014. 3. 28), 「韓·美, 오렌지 마찰 해소...원산지 증명 美 요구 수용' 확대적용」,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485217>(검색일: 2015. 3. 11).

14) 산업통상자원부(2014. 5. 14), 「정부, 한미 FTA 원산지검증 합의서 왜 숨기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보도해명자료),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56603&bbs_cd_n=81(검색일: 2015. 3. 17).

15) 『매일경제신문』(2014. 4. 21), 「미국산 도요타, 한·미 FTA 원산지 위반 아니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4212013081&code=920100&med=khan(검색일: 2015. 3. 11).

16) World Trade Online(2015. 3. 13), "Cutler Says Financial Data Transfer, Origin Rules Remain Problems Under KORUS," <http://insidetrade.com/daily-news/cutler-says-financial-data-transfer-origin-rules-remain-problems-under-korus>(accessed on March 17, 2015).

3)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으며,¹⁷⁾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1년 약사법을 개정하여 ‘통지’ 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난 2015년 3월 5일에는 ‘시판방지’가 규정된 「약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행이 일단락되었음.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의약품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기간이 존속하는 동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복제약(제네릭, Generic)의 시판을 금지하는 제도. 통보, 시판방지조치를 주된 내용으로 함.¹⁸⁾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중 ‘통보’는 이미 한·미 FTA 발효 이전인 2011년 「약사법」 개정으로 도입됨.
- 특허 기간 중 복제약의 시판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특허권자에게 신청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¹⁹⁾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중 ‘시판방지’는 2015년 3월 5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약사법」에 포함됨.
- 특허권자와 복제약 제약사 사이에 특허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식약청이 복제약의 판매를 9개월 동안 제한

■ 미국은 우리나라가 이행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이익을 제기하지는 않아, 향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한·미 FTA의 이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됨.

4) 의약품 가격인하 정책

■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일련의 의약품 가격인하 정책을 추진하여 전체 의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건강보험재정 절감되는 등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음.²⁰⁾

- 노년층 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복지확대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자 정부는 의약품 가격인하정책을 추진
- 국민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을 대만과 유사한 2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제로 약품비 비중이 낮아지고 건강보험재정이 절약되었음.

17) 한·미 FTA 협정문 제18.8조(특허) 제6항 나호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5절(의약품과 관련된 조치).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협정문, <http://www.fta.go.kr/us/doc/1> (검색일: 2015. 3. 6).

18) 『매일경제』, 매일경제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print.nhn?docId=21020&cid=43659&categoryId=43659> (검색일: 2015. 3. 6).

19) 구 약사법(법률 제11118호, 2011. 12. 2, 일부개정). 제31조의 4(품목허가 신청 사실 통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1), <http://law.go.kr/l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C%95%BD%EC%82%AC%EB%B2%95&x=0&y=0#liBgcolor1> (검색일: 2015. 3. 6).

20) 보건복지부(2013년 7월 24일), 「약가제도개편 1년 후 약가인하 효과 평가 결과」 (보도자료),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288812&SEARCHKEY=TITLE&SEARCHVALUE=약가제도개편 (검색일: 2015. 3. 12).

- 정부는 기등재 의약품 품목정비 사업으로 약 7,600억 원의 약품비가 절감되었음.
- ※ 약제비 적정화 방안: 약값 대비 효과가 뛰어난 의약품을 보험에 선별 등재하는 ‘선별등재제도’와 이미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 중에서 약값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의약품을 보험등재 목록에서 제외하거나 가격을 조정하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함.
- ※ 시장형 실거래가제: 병원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보험 등재가와 실제 구입가격 사이의 차액 중 70%를 돌려주는 제도
- 2012년 일괄약가인하 시행만으로 약품비는 전년대비 3.4% 감소하여 약품비와 보험재정이 절감되었고 총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8% 감소
- 2012년 1월 일괄약가인하 이후 1년간 총 약품비는 12조 7,740억 원으로 전년대비 4,489억 원(3.4%) 감소하여 2007년 이후 연평균 9.8%씩 증가하던 약품비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
- 일괄약가인하로 총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6.45%로 전년(28.53%)대비 2.08%포인트 감소

■ 미국 무역대표는 우리나라가 2013년에 발표한 의약품 가격인하정책이 이해당사자의 이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선을 요구했고,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음.²¹⁾

- 한·미 FTA 제5장(의약품 및 의료기기)에서는 급여액 결정이 경쟁적 시장도출 가격에 기초하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²²⁾ 우리나라의 조치가 한·미 FTA 협정상의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국내적으로도 제약 산업의 신약개발 의지가 저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²³⁾

5)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에서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을 발효 2년 후부터 허용하도록 미국과 합의하였으며,²⁴⁾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 여기서의 금융 정보의 해외이전은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하여 자국 영역 밖으로 금융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금융정보의 생성과 처리를 위한 IT 설비, 금융전산망 등 본질적인 요소들의 해외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²⁵⁾
-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는 현행 법령의 허용범위 안에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21)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14), “2014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 216,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4%20NTE%20Report%20on%20FTB.pdf>(accessed March 4, 2014).

22) 한·미 FTA 협정문 제5.2조(혁신에의 접근),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협정문, <http://www.fta.go.kr/us/doc/1>(검색일: 2015. 3. 12).

23) 『뉴스토마토』(2015. 2. 16), 「(제약은 미래산업이다!)약가인하가 드리운 '그림자'」, <http://www.healthtomato.com/view.aspx?seq=534779#>(검색일: 2015. 3. 12).

24) 한·미 FTA 특송화물 부속서 13-가(국경간 무역) 제3항 가 호 및 부속서 13-나(구체적 약속) 제2절(정보의 이전),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협정문, <http://www.fta.go.kr/us/doc/1>(검색일: 2015. 3. 6).

25)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주요 내용」(설명자료), p. 127, <http://www.fta.go.kr/us/doc/1>(검색일: 2015. 3. 6).

을 신설하여 구체적 위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음.²⁶⁾

-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등 모든 관련법상의 보호조치 이행이 요구되며, 개인고객의 주민번호는 국외로의 이전 자체가 금지됨.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외의 본점 또는 계열사에 한해 위탁이 가능하지만, 금융이용자 보호 및 감독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 원장 등 주요 설비에 대해서는 위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미국이 금융 정보의 해외이전에 대한 승인과정에서 한국 정부기관의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과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²⁷⁾

- 구체적으로 미국은 신청 건수에 비해 한국의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비율이 낮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며 처리기간이 길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²⁸⁾

6) 통관(특송화물 배송)

■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에서 미화 200달러 이하의 특송화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하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하였음.²⁹⁾

※ 특송화물: 특급특송화물. FEDEX, DHL 등 특급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배달되는 상용서류, 샘플 등을 의미함.

- ‘통상적인 상황(under normal circumstances)’을 전제로 인정되는 혜택이며, 항공 화물운송장이나 그 밖의 선하증권을 수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수입제한 상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반입서류의 요구는 물론 관세 또는 세금도 부과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음.³⁰⁾

■ 미국은 우리나라가 특송화물에 대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³¹⁾

26) 금융위원회(2013년 4월 17일),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규정제정 예고 등(보도자료),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ubject&sword=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r_url=&menu=7210100&no=29204(검색일: 2015. 3. 17).

2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14), “The U.S.-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KORUS FTA): Provisions and Implementation,” p. 14. (September 16)

28) World Trade Online(2015. 3. 13), “Cutler Says Financial Data Transfer, Origin Rules Remain Problems Under KORUS.” <http://insidetrade.com/daily-news/cutler-says-financial-data-transfer-origin-rules-remain-problems-under-korus>(accessed on March 17, 2015).

29) 한·미 FTA 협정문 제7.7조(특송화물) 사 호,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협정문, <http://www.fta.go.kr/us/doc/1>(검색일: 2015. 3. 6).

30) 한·미 FTA 협정문 7.7조(특송화물) 사 호의 각주 2,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협정문, <http://www.fta.go.kr/us/doc/1>. (검색일: 2015년 3. 6).

3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U.S.-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KORUS FTA): Provisions and Implementation,” p. 14. (September 16)

- 미국은 한국 관세청이 인터넷 구매와 같은 몇몇 특송화물 배송에 대해 혜택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배송의 지체에 우려를 표시하였음.³²⁾
- 미국은 한·미 FTA 상품무역 위원회에서 특송화물 통관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이 통관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 우리나라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³³⁾
- 우리나라는 2014년 11월 4일과 5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 FTA 이행기구회의에서 통관 분야 협정 관련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세관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³⁴⁾

7)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도

■ 한·미 FTA 협상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TPP 가입을 위한 조치로 지목된 유기식품의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법령을 정비함.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1459호, 2012. 6. 1., 전부 개정)은 친환경 인증제도의 동등성(equivalency) 규정 부재로 인한 통상문제 제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의 유기 가공식품 인증의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개정된 법률은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이 법에 따른 인증제와 동등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면 유기 가공식품 인증에 대해 동등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³⁵⁾

■ 우리나라는 유기 가공식품 관리 제도를 이원화하여 ‘표시제’와 ‘인증제’로 구별하여 운영하였으나, 소비자 혼란 방지와 관리의 체계성을 위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표시제’를 폐지하고 ‘인증제’로 일원화³⁶⁾

※ 표시제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표시를 하고, 이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 또는 영업이 불가³⁷⁾

※ 인증제도: 제품 평가대상을 일정한 표준기준 또는 기술규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인증하는 절차 및 제도³⁸⁾

32) USTR(2014),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 213. (March)

33) Inside U.S. Trade(2014), “Officials: U.S. Hope to Consult further with Korea on TPP within Weeks.” (March 21)

34) 산업통상자원부(2014), 「한·미 FTA 이행기구회의 개최 결과」(보도자료),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56749(검색일: 2015. 3. 6).

35) 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59호, 2012.6.1., 전부개정) 제25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2), <http://law.go.kr/lisInfoP.do?lsiSeq=125854&ancYd=20120601&ancNo=11459&efYd=2014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검색일: 2015. 3. 9).

36) 농림축산식품부(2014), 「한·미 유기 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2014년 6월 13일 보도자료), http://www.mafra.go.kr/list.jsp?newsid=155445716§ion_id=b_sec_1&board_kind=C&board_skin_id=C3&division=B&group_id=3&menu_id=1125(검색일: 2015. 3. 10).

37) 「식품위생법」(법률 제 12390호) 제10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2), <http://law.go.kr/lisInfoP.do?lsiSeq=150747&ancYd=20140128&ancNo=12390&efYd=20150129&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검색일: 2015. 3. 11).

-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2014년 1월 1일~ 6월 30일까지 제도기간을 운영

■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약’은 2014년 6월 30일 체결 후, 같은 해 7월 1일 발효.³⁹⁾

※ 상호동등성 인정제도: 양국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서로 동일한 수준이라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상대국에서 인증한 제품에 대해서 자국시장에서도 인증표시(로고)를 부착하여 유통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협상과정에서 양국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성분 허용에 대하여 대립하였지만, 양국은 유기가공식품의 제조 및 취급 과정에서 GMO의 사용을 금지하고, 잔류 검사 및 검출 시의 후속조치는 수입국의 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⁴⁰⁾

- 미국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5%까지의 GMO는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한국은 GMO의 불검출을 유기농 인증의 기준으로 주장
- 결국 양국은 양국의 유기농 인증을 인정하지만 미국의 유기가공식품의 잔류검사 및 검출 시, GMO 검출이 확인되면 한국에서 유기농 표기가 불가

-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협약’의 충족 조건은 가공식품의 범위가 한국의 식품 공전상의 분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양국의 규정에 따라 유기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이어야 하며,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되고, 유기 원료가 95% 이상 함유된 제품이어야 함.⁴¹⁾

※ 유기: ‘유기’(Organic)란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함.⁴²⁾

※ 유기식품: ‘유기식품’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을 말함.⁴³⁾

38)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0180&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 2015. 3. 11).

39) 농림축산식품부(2014),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2014년 7월 1일 보도자료), http://www.afra.go.kr/list.jsp?newsid=155446294§ion_id=b_sec_1&listcnt=5&pageNo=1&year=&group_id=3&menu_id=1125&link_menu_id=&division=B&board_kind=C&board_skin_id=C3&parent_code=3&link_url=&depth=1 (검색일: 2015. 3. 9).

40) 농림축산식품부(2014),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2014년 7월 1일 보도자료), http://www.afra.go.kr/list.jsp?newsid=155446294§ion_id=b_sec_1&listcnt=5&pageNo=1&year=&group_id=3&menu_id=1125&link_menu_id=&division=B&board_kind=C&board_skin_id=C3&parent_code=3&link_url=&depth=1 (검색일: 2015. 3. 9).

41) 농림축산식품부(2014),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2014년 6월13일 보도자료), http://www.mafra.go.kr/list.jsp?newsid=155445716§ion_id=b_sec_1&board_kind=C&board_skin_id=C3&division=B&group_id=3&menu_id=1125 (검색일: 2015. 3. 10)

4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2515호 제2조 제3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2), <http://law.go.kr/l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B%8C%80%EA%B8%B0%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x=0&y=0#liBgcolor1> (검색일: 2015. 3. 10).

4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2515호 제2조 제4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2), <http://law.go.kr/l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B%8C%80%EA%B8%B0%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x=0&y=0#liBgcolor1> (검색일: 2015. 3. 10).

- 미국이 동등성 인정 협정의 체결로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해소되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인증제와 관련한 갈등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향후 GMO 기준의 완화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⁴⁴⁾
- 한국의 유기가공식품과 관련 ‘인증제’ 일원화로 미국이 유기가공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유기(Organic)’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었지만,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협약’으로 자국의 인증만으로도 한국에 ‘유기(Organic)’로 수출이 가능하여 불필요한 서류작업을 최소화함.⁴⁵⁾
- 한국의 경우, 통관 및 유통 과정에서 인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잔류검사서서 GMO가 검출된 제품은 유기표시를 삭제해야 하므로 GMO의 5% 비의도적 혼합을 허용하는 미국이 향후 GMO 관련 기준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⁴⁶⁾

5. 맺음말

- 한·미 FTA가 양국간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발효 3년차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산업별 영향은 편차가 심해 한·미 FTA 효과가 미진한 산업에 대한 활용대책 수립이 필요함.
- 한·미 FTA 발효 이후 34개월 동안 대미 수출입은 각각 발효 전 동기대비 31.54%와 10.77% 증가했으나, 한·미 FTA의 효과는 각각 82.4%와 8.44%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어 FTA가 양국 교역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FTA로 인한 대미 수출은 자동차와 부품, 금속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한 반면, 수입은 자동차와 부품 및 기타 제조업에서만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입의 긍정적 효과발현을 위한 대책이 요구됨.
-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전체 품목에서 대미국 수출입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포인트와 1.9%포인트 증가하는 등 품목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FTA가 양국간 무역의 내연적 확장(intensive margin)뿐 아니라 외연적 확장(extensive margin)에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 교역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소기업들도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활용률 역시 발효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2014년 현재 수입은 60.7%, 수출은 43.8%에 그치는 데다 산업별로 편차가 커 활용률 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 부담완화를 위한 양국 세관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44) 코트라(2014), 「한·미 유기 가공식품 인증 상호 동등성 인정 발효」 (global window 상품산업 트렌드 게시물), 2014년 7월 3일.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17451&ARTICLE_SE=20302(검색일: 2015. 3. 9).

45) 농림축산식품부(2014), 「한·미 유기 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2014년 7월 1일 보도자료), http://www.afra.go.kr/list.jsp?newsid=155446294§ion_id=b_sec_1&listcnt=5&pageNo=1&year=&group_id=3&menu_id=1125&link_menu_id=&division=B&board_kind=C&board_skin_id=C3&parent_code=3&link_url=&depth=1(검색일: 2015. 3. 9).

46) 코트라(2014), 「한·미 유기 가공식품 인증 상호 동등성 인정 발효」 (global window 상품산업 트렌드 게시물), 2014년 7월 3일.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17451&ARTICLE_SE=20302(검색일: 2015. 3. 9).

- 한·미 FTA로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실적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며 주로 운송기기와 비즈니스서비스업에서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어 지속적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과 함께 외국인투자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우리나라가 이행한 내용이나 수준에 대해 양국 간 시각차가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입한 조치들이 한·미 FTA의 이행과 관련하여 문제될 소지도 있어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원산지 검증, 통관,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은 이행 내용이나 수준에 대해 한미 양국이 이견을 보인 경우로 향후 이행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세부규정을 마련하거나 세부 합의의 도출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의약품 가격인하정책,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는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입한 조치로서 한·미 FTA 협정의 취지 또는 의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KIEP**